

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기념

토크 콘서트,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말하다!



날짜: 2012년 5월 4일(금) 14:00~17:00
주최: 서울시의원 윤명화, 봉사단 교육운동본부
후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기념

토크 콘서트,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말하다!



날짜: 2012년 5월 4일(금) 14:00~17:00
주최: 서울시의원 윤명화, 봉사단 교육운동본부
후원: 서울시교육청

차 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 경과	1
서울학생인권조례 3,4월 상담통계	7
서울학생인권조례 교육자료	11
서울학생인권조례 홍보자료	27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 추진경과**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경과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경과

2010년

- 10. 27.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주민발의(안) 서명추진
(10.10.27~11.4.26)
- 11. 09. 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
- 11. 23. 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 자문위원회 워크숍
- 12. 01. 생활지도혁신분과회의(1차)
- 12. 06. 학생인권조례분과회의(1차)
- 12. 11. 생활지도혁신분과 워크숍
- 12. 20. 학생인권조례분과회의(2차)
- 12. 21. 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2011년

- 4. 5. 서울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 방문 의견수렴
- 4. 12. 서울 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방문 의견수렴
- 4. 19. 한국교총 방문 의견수렴
- 4. 20. 생활교육혁신을 위한 '생활교육 혁신 연속 토론회' 개최(1회)
※ 연속토론회 주제: 교사, 교권을 말하다(4.20)
- 4. 22.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1차 공청회(동부-동부교육지원청)
- 4. 27. 학생인권 관련 연구 용역 추진(4.27~8.31)
※ 연구과제명: 서울지역 학생인권실태 조사 분석 및 서울학생

인권 조례안 개발에 관한 연구

- 5. 1.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4개 권역별 인권침해 상담조사)
- 5. 3.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2차 공청회(서부-서부교육지원청)
- 5. 3.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3차 공청회(남부-여의도 중학교)
- 5. 11.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4차 공청회(북부-창일중학교)
- 5. 11.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5차 공청회(중부-성동공업고)
- 5. 17.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6차 공청회(강동-문정고등학교)
- 5. 17.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7차 공청회(강서-송정초등학교)
- 5. 서울초등학교 교장회 방문 의견수렴
- 5. 18. 생활교육혁신을 위한 '생활교육 혁신 연속 토론회' 개최(2회)
※ 연속토론회 주제 : 따돌림 ·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5. 19. 초등교감 대상 학생인권조례 의견수렴
- 5. 24. 전교조 방문 의견수렴
- 5. 24.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8차 공청회(강남-서울고등학교)
- 5. 24.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9차 공청회(동작-강남중학교)
- 5. 25.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10차 공청회(성동-선화예술고)
- 5. 25.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11차 공청회(성북-한신대학교)
- 5. 31.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
(자문위원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 구성 변경)
- 6. 2. 학생인권조례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6.2.~6.15.)
- 6. 10. 한교조 방문 의견수렴
- 6. 21.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2차 회의(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 6. 22. 생활교육혁신을 위한 '생활교육 혁신 연속 토론회' 개최(3회)
※ 연속토론회 주제 : 생활평점제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6.22)
- 7. 1. 학생생활지도대안 마련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각 학교 의견수렴
※ 총 733개 교 회신 (7.1 ~ 7.12.)
(초 : 312개 교, 중 : 247개 교, 고 : 163개 교, 유치원 : 6개 원, 특수학교 : 5개 교)
- 7. 5.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3차 회의(학생인권조례 초안 확정검토)

- 7. 11. 고교 학생회장 대상 의견수렴
- 7. 20. 생활교육혁신을 위한 '생활교육 혁신 연속 토론회' 개최(4회)
※ 연속토론회 주제 : 학생인권조례시대, 생활지도 근본대안 모색
- 7. 20.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4차 회의(학생인권조례 초안 추가 검토)
- 7. 29. 학생생활지도 근본대안 수립을 위한 TF 구성·운영(7.29~8.18)
- 8. 3.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청구 수리
※ 법정 인원 충족(97,702명)
- 8. 19.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5차 회의(학생인권조례 초안 및 학생생활지도혁신방안 확정)
※ 학생인권조례 연구 용역 결과 및 학생생활지도 TF 결과 반영
- 9. 7. 학생생활지도자문위원회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및 학생생활지도 혁신방안 발표 및 기자회견
- 9. 7. 학생인권조례 주제별 의견수렴(홈페이지 9.7~9.27)
- 9. 8. 학생인권조례 초안 및 학생생활지도혁신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종합공청회(교육연수원)
- 9. 27.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6차 회의(학생인권조례 초안 수정)
※ 학생인권조례 종합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반영
- 9. 30.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시의회 이송
- 10. 11. 서울학생참여위원회 의견수렴
- 10. 13.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서울학생인권조례 시안 제출
- 10. 14. 교육청 국·과장 회의-자문위 제출안에 대한 의견수렴
- 10. 19.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의견수렴
- 10. 25. 지역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의견수렴
- 10. 27. 지역교육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의견수렴
- 10. 14. 교육청 국·과장 회의-자문위 제출안에 대한 의견수렴
- 11. 18.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7차 회의(학생인권조례 향후 추진 계획)
- 12. 19.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수정안 시의회 통과

2012년

1. 9.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
1. 20.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 철회
1. 26.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 1.31. ~ 2.21. 인권조례 후속조치 TF 구성 및 협의
3. 22. 학생인권센터 운영 계획 수립
4. 24.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5. 1. 학생참여단 모집 공고
5. 3.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및 추천 공고
5. 4. 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3,4월 상담통계

서울학생인권조례 3, 4월 상담 통계

인권교육센터 3월 상담 통계

기간: 2012년 3월 1일 ~ 2012년 3월 31일(상담 : 216건)

상담유형	전화상담	서면민원	센터방문	학교방문	계
건수	216	0	0	0	216
인권침해유형	개인정보 침해	기타	두발	따돌림	복장
건수	1	17	92	2	6
유형	부당징계	사생활 침해	양심종교의 자유	언어폭력	정규교과외 교육활동
건수	11	14	1	14	10
유형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차별	체벌	학교규정
건수	15	2	4	17	2
유형	학생자치활동	성폭력			계
건수	6	2			216

인권교육센터 4월 상담 통계

기간: 2012년 4월 1일 ~ 2012년 4월 31일 (상담 : 135건)

상담유형	전화상담	서면민원	대면상담		계
건수	131	1	3		135
인권침해유형	개인정보 침해	기타	두발	따돌림	복장
건수	4	15	23	1	1
유형	부당징계	사생활 침해	성폭력	언어폭력	정규교과외 교육활동
건수	12	5	4	11	2
유형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차별	체벌	학교규정
건수	25	7	5	13	1
유형	의사표현의 자유	학습권침해	강제전학		계
건수	3	1	2		135

< 인권교육센터 2012년 상담 현황 (2012.4.30 기준) >

구분	상담인수				상담유형 별 상담인수										합계
	전화	대면	스피	계	자해	폭행	강탈	괴롭힘	성매매	징계	학살	학대	정서적	학대	
구분	409	5	1	45	9	38	3	9	6	25	1	12	0	115	
구분	상담유형 별 상담인수													합계	
	학대	학대	학대	학대	학대	학대	학대	학대	학대	학대	학대	학대	학대		학대
구분	7	19	5	1	3	6	7	24	77	2	0	46	415	00	

서울 학생인권조례
교육자료

서울 학생인권조례 교육 자료

☞ 학생인권조례가 뭔가요?

서울시에 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학생, 교사, 학교, 교육청이 지키도록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공교육기관에는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어떻게 만들어 졌나요?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들이 있는데 나이가 어리고,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시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권리를 누리는 연습을 통해 책임도 알게 되고,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서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10만 명에 가까운 서울시민들이 서명을 했고, 이러한 뜻을 서울시의회가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는 서울시에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해당되며,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권리들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뜻한다.



제3조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이 조례에 나오지 않은 학생들의 인권 역시 중요하고,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 (책무)

교육감, 학교를 세우는 사람, 경영하는 사람,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은 인권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학생은 교사, 다른 학생 같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참여하고 학생의 참여하여 만들어진 규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어디서 태어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말을 쓰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임신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가족이 어떻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피부색이 검든지 희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여자를 사랑하든지 남자를 사랑하든지, 예전에 처벌을 받았든지 않았든지, 성적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는 이유들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

제28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교육감, 학교는 가난한 학생, 장애가 있는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을 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필요로 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감, 학교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없애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취업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그 누구로부터도 맞거나 기합, 성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괴롭힘 같은 어떠한 폭력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교육감,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사고가 일어난 경우엔 신속히 피해자를 구조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협력해야 한다.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권리가 있다.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의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들을 심하게 경쟁시키지 않아야 하고 과도한 선행학습을 시키지도 말아야 한다.



제9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야자), 보충수업, 방과후학교 같은 정규교과 이외의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에게 야자, 보충수업 등의 수업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행사에 참여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휴식을 취할 권리)

학생은 너무 많은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쉴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하고 싶지 않은 정규 수업이 아닌 활동을 강제로 시켜서 학생들을 쉬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



제14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학생은 가족이 누구인지, 친구들이 어떠한지, 성적이 어떠한지, 병이 있는지, 징계를 받았는지, 교육비를 안 냈는지, 남자를 사랑하는지 여자를 사랑하는지와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에게 학교 밖에서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11조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학생은 자신에 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신과 관련된 학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에 관한 기록 중 잘못된 내용,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고치거나 지우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돈을 쓴 내역 등의 재정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머리카락, 옷 입는 것 등 걸모습을 자유롭게 개성 있게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복장에 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학생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를 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소지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만 해야 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학교장,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과 전자기기의 소지와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이 만들거나 고친 학교 규칙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은 원하는대로 생각하고, 믿을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학교는 학생의 생각과 다른 반성, 서약, 진술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생이 대신할 수업없이 원치 않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

학생은 글로 쓰든, 말하든, 그림을 그리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을 권리,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 안에서의 집회의 경우 학습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칙으로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다른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학교는 이런 활동들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이 성적이 낮거나, 예전에 징계를 받았거나 하는 이유로 학생회나 다른 조직에 참여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칙이나 학교 규정을 만들거나 바꾸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은 학칙이나 학교 규정을 학생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할 수 있게 바꾸어야 한다.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 만나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학교,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이 있는 일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생회 같은 학생자치조직은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학생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진로를 찾을 때 등에는 학교에서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권리를 지키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제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나 교육감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서관,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확보하고, 이들 공간이 냉방과 난방이 잘 되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급식에 대한 권리)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로 안전하게 만든 급식을 먹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알려야 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대해 의견을 학생들에게 물어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감은 환경에 좋은 급식,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급식,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4조 (건강에 관한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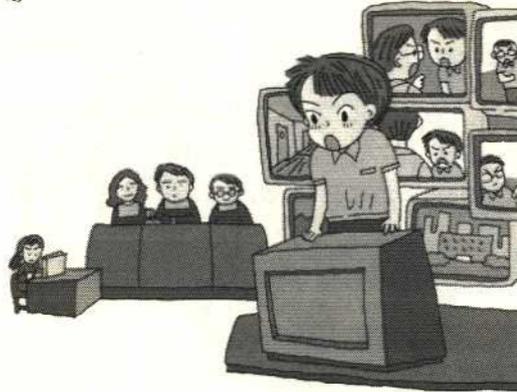
학생은 건강해야 할 권리를 가진다. 여학생이 생리 때문에 아파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5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은 벌을 받을 때 받는 이유에 대해 미리 알림을 받아야 하고, 벌을 받을 때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변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또한 자기 대신 자기를 도와서 얘기해 줄 사람을 둘 수 있고, 그게 벌을 받을 일인지 공정한 과정을 통해 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는 벌을 줄 때도 벌을 받는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학교는 벌을 받은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고, 학교는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 지도 방법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5



제26조 (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인권을 지키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27조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학생, 그리고 누구든지 학생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에 대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하거나 조사할 것을 요청하거나, 학교,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이야기 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남에게 함부로 알려져선 안되며, 그것 때문에 해를 입어서도 안 된다. 학생인권옹호관과 학교장, 교육감은 이에 대해 알아 보고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줘야 한다.

제29조 (학생인권교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 중·고등 학생,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설명서로 만들어 홍보해야 한다. 보호자에게 이 조례내용을 알려야 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이런 게 궁금해요! 뽀뽀뽀~

Q. 학생인권조례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건가요? 간접체벌은 허용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A. 체벌 역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간주하고 금지됩니다. 사실 체벌은 이미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입니다. 때를 이용하거나 손바닥, 주먹, 발길질 등으로 직접 학생을 때리는 체벌이든, 오리걸음, 엎드려뺏쳐 등 기합, 얼차려를 주는 체벌이든, 둘 다 모두 체벌이고 폭력이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체벌 외에도 언어폭력이라든지, 성폭력, 따돌림, 괴롭힘 같은 모든 종류의 폭력은 금지됩니다.

Q.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야자)과 보충수업 참여를 강요합니다. 야자, 보충수업 등은 강제로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A. 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같은 정규 수업 이외의 활동 참여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발적 뜻에 따라서 참여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것들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됩니다.

Q. 머리카락은 길이만 마음대로 기를 수 있나요? 아니면 파마나 염색까지 가능한가요? 교복 입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교복도 자유인가요?

A. 머리카락의 길이, 파마, 염색은 학생 자율적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는 두발에 관해서는 강제로 규정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파마, 염색 등에 대해 토론하거나 설득할 수 있지만, 벌점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교복(복장)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정한 학칙으로 학교에서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Q. 소지품 검사는 금지되나요?

A.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위협이 가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금지됩니다.

Q. 학교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수업시간에 사용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휴대전화 말고도 다른 전자기기 (MP3, PMP 등등)도 소지해도 되나요?

A. 학교는 학생의 핸드폰이나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업시간 같은 때는 학생들이 이를 사용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한 학칙으로 수업시간 등에는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Q. 학교에서 듣고 싶지 않은 종교 수업(채플)을 들으라고 강요합니다. 수업에 불참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네요. 대체 과목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A.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해선 안 되고 대체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지침이나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한 원칙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예배, 채플 등의 종교 교육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정 종교 과목의 수강, 종교 행사 참여) 그리고 학교는 이런 종교 과목 수강을 원치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대체 과목을 마련해야 합니다.

Q. 학교 급식의 질이 안 좋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학교에 제출하려 했는데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설문조사나 서명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A.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당연히 학교가 서명이나 설문 조사 등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교지나 학교 신문에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검열 받아서도 안 되고요.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자기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권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Q. 학교에서 체벌을 하지 않는 대신에 상벌점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점을 너무 많이 주고 오히려 징계가 더 늘어난 거 같습니다. 상벌점제는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A. 상점이나 벌점을 주는 것이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상벌점제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점과 상점을 주는 기준이 너무 교사 마음대로라거나, 반인권적인 경우도 많고, 벌점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거나 과도한 징계로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빼기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무더기로 퇴학을 당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는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시행되는 상벌점제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고치거나 없애도록 학칙 개정을 요구해보는 게 어떨까요?

Q.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라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적용 안 된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A. 학생인권조례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서울에 있는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적용을 받습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사이에는 교원 징계 절차나 이사회 권한 등 운영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립학교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세워지고, 교육청의 감독을 받아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사립학교에도 당연히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을 받고,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 빙을 치는 교사나 교장이 있으면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해주세요!

Q. 학생들이 학교운영이나 학교 규칙을 고치고 새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A.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칙 등 학교 규정을 만들고 고치는 데에 참여할 권리,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은 학생회나 다른 방식으로 학교운영이나 학교 규칙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규칙을 고치자고 의견을 내면, 학교에서는 "학교규칙소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전체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들(교직원, 학부모 등등이 있겠죠?)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만 합

서울학생인권조례
홍보자료

서울 학생인권조례 홍보 자료

인권조례 내용 홍보 “학생인권조례,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서울학생인권조례!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학교는 안전해야!
다들 위험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제21조~제24조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조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 No!

여자는 남자는 어떤 종교를 믿든, 몸이 불편하면 어느, 장애를 가진다면 어디에 살든, 생각이 다른 다른, 피부색이 어둡든, 아팠거나 병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는 모든 경우를 막아주는 차별은 안돼!

제 28조
더 많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권리를 보장해야!

지금 차별받고 있는 약한 친구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해야해요!

제18조~제20조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학교규칙, 교육정책 만들 때도 학생참여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기!

제30조
폭력은 이제 그만!

맞기 때지기 놓자기, 괴롭힘 괴롭힘, 폭행 폭행 등 무서운 괴롭힘은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제26조~제27조
권리는 함께 지켜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도움이 필요할 때 학생인권보호자에게 도움을 받아!

제13조~제15조
인권교육센터 3999-080~6

인권교육센터 3999-080~6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www.st-rights.or.kr

학교운영위원회 대상 홍보 “인권이 꽃피는 학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뒷면에 계속)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 서울 시민의 발의를 통해 이루어진 최초의 학생인권조례입니다.
-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 교사와 학생이 대립 관계가 아닌, 협력적이고 공동체적 인권의식을 신장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Q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실효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 시민의 발의를 통해 만들어져 1월 26일 공포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칙 기재항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의견수렴을 통한 학칙의 민주적 개정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기본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용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일선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할 경우 그 내용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Q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인권은 신장되지만, 교권의 추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무성도 함께 명시되어 교권보호 관련 조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 제1조

-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권 확립과 교원업무 정상화는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공문서를 줄이고,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를 폐지해 행정업무 부담을 줄입니다. /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합니다. / 2012년 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896명을 확대 배치해 학교폭력 예방에서 치유까지 지원합니다. /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통해 학생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 및 구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 ※ '12년 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등(896명) 확대 배치
- ※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상담심리도구 개발, 학교별 검사 실시, Wee센터 연계 심층상담 실시

Q

학생인권 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고 하는데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 역할은 학생인권 보호, 침해 예방과 구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학생인권 침해 예방과 구제에 대한 업무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 개발 /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Q

학생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 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교육청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학생 학기당 2시간, 교직원 연간 2시간 등)과 학생인권 침해 상담 및 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을 제 개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은 규제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참여와 소통 중심의 학교생활규정'이 되도록 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사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해야 합니다.
- 단위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안을 마련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 위반시 제재가 따르는 교칙의 내용은 단순하고 명쾌하며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른 것을 제재할 때 규칙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규칙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 학생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함께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로가 동의하고 합의하는 규칙을 만들 때 규칙이 잘 준수될 수 있습니다.
-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자율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토론하더라도 학부모와 교사는 민주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말이 아니라 비슷한 말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 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 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 문의	02-3999-080~082
인권침해 상담	02-3999-083~085
1, 2권역 동부, 성동, 강동, 서부, 강서	083
3권역 남부, 강남, 동작	084
4권역 중부, 북부, 성북	085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를 향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 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 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공개 모집

학생참여단

모집한다~람주!!



학생참여단이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학생들의 기구 (임기 1년)

● 학생참여단이 하는 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7조 제4항)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모집 요강

신청 자격 **서울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중 학생참여단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 (초·중·고)**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 <http://www.st-rights.or.kr/>)

신청 기간 **2012. 5. 1(화) ~ 5. 10(목)**

모집 인원 **100명** (추천 80명, 교육감 별도 위촉 20명)

공개 추천 **2012. 5. 11(금)**

선정 알림 **2012. 5. 14(월)**

- 학생참여단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학생참여단 발단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감 위촉장 수여, 출석인정)
- 학생참여단 위원이 타 시도로 전출, 퇴학, 자퇴, 고등학교 졸업할 경우 자동으로 위원자격을 상실됩니다.
- 추천을 통해 선발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참여의사에 따라 서울 학생인권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 서포터즈강?

서울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참여단 활동을 학교에 홍보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참여단에 건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참여단 발단식

2012년 5월 17일(목) 오후 4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212호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담당자: 조영선 02-3999-086)

